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파리공방』 정보공개서

(주)아이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아이윈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8032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04.0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신규브랜드』 가맹사업본부 (주)아이윈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전화번호	1661-0054	팩스번호	070-8290-9595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영업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1661-0054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iwin00700@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9.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서류

[별첨 1] 당사가 정하는 원부재료 필수 공급 품목 및 거래형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첨 2] 당사가 정하는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내역

[별첨 3] 2023년(7기), 2022년(6기), 2021년(5기) 표준재무제표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아이원	영업표지	파리공방 외 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 04. 28.	2017. 04. 29.	윤한주	1661-0054	070-8290-9595
법인등록번호	110111-6389715	사업자등록번호	624-87-0070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윤한주 (주)아이원	파리공방 외 1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한주	1661-0054	070-8290-95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진희 (주)아이원	파리공방 외 1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한주	1661-0054	070-8290-95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윤한주 (주)소보루에프씨	없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한주	1577-3092	070-8290-9595
	법인등록번호		110111-4796029	사업자등록번호	215-87-6470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윤한주 (주)아이원엔터프라이즈	점프노리키즈카페 외 1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한주	1661-0054	070-8290-9595
	법인등록번호		110111-5297117	사업자등록번호	215-87-8810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브랜드 및 가맹사업 운영권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파리공방]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파리공방(Paris Atelier)』	
상 호	『파리공방』 _____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가맹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0-1467800-0000호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18-0031691호
그 밖의 영업표지	기타	현재 사용하고 있는 BI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03,508	718,038	185,470	1,421,596	8,695	7,448
2022년	950,047	733,125	216,921	1,480,683	12,055	31,451
2023년	1,144,902	891,858	253,044	2,076,073	12,062	36,122

※ 그 근거자료는 [별첨 3]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주)아이원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상품매출액에 포함되며, 금액으로 표기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개설된 파리공방 가맹점이 없어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포아이니』와 『아띠앙쥬』 브랜드 매출액으로 구분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윤한주	대표이사	2015.11.05. ~ 현재	(주)아이원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2015.11.05. ~ 현재	(주)소보루에프씨 대표이사	가맹사업관리
	김진희	사내이사	2017.04.28. ~ 현재	(주)아이원 사내이사	재무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해당사항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가맹 사업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아이원	가맹사업경영	2017.06.26.~2021.04.26	아띠앙쥬(등록번호 : 20170891) 라는 영업표지의 유아관련 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아이원	가맹사업경영	2017.04.29.~현재	포아이니(등록번호 : 20170702) 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주)아이원엔터프라이즈	가맹사업경영	2013.04.12.~현재	점프노리키즈카페(등록번호 : 20130100384) 라는 영업표지의 유아관련 사업 경영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주)아이원엔터프라이즈	가맹사업경영	2015.03.04.~현재	김밥킹(등록번호 : 20150154) 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주)소보루에프씨	가맹사업경영	2011.06.02.~2020.04.14	소보루치킨(등록번호 : 20110100275) 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주)소보루에프씨	가맹사업경영	2014.06.20.~2020.04.14	두 마리아빠통닭(등록번호 : 20140458) 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서비스표) 	제30류 제43류	등록 2019.04.09.	등록 제40-1467800-0000호	윤한주 한범구	2029.04.09. (2029.04.09.)
상표(서비스표) 	제30류 제43류	출원 2018.03.12.	출원 제40-2018-0031691호	윤한주 한범구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상표(서비스표) 지식재산권은 현재 (주)아이원의 대표이사 겸 출원자 윤한주, 한범구와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출원 중으로 "당사의 상표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파리공방」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3월 28일(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접수신청일)(최초등록일 : 2018.04.04.)
 ※ 「파리공방」 직영사업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 「파리공방」은 아직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파리공방」 연혁

☞ 「파리공방」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이원	파리공방	윤한주,한범구	2018.03.28 ~ 2020.12.10.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155, 5층 (가락동, 와이에이치빌딩)
(주)아이원	파리공방	윤한주,한범구	2020.12.10. ~ 2021.06.25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1405층
(주)아이원	파리공방	윤한주	2021.06.28. ~ 2021.11.12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1405층
(주)아이원	파리공방	윤한주	2021.11.13. ~ 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40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빌)

3. 「파리공방」 업종

☞ 「파리공방」 업종의 대분류 및 소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파리공방	커피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파리공방」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파리공방」 가맹점의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년	-	-	-	-	-	-	-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파리공방」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직영점/가맹점의 수(단위: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아이원	아띠앙주	20170891	키즈카페	가맹사업중단	가맹사업중단	가맹사업중단
가맹본부	(주)아이원	포아이니	20170702	기타외식업	0/23	0/27	0/37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원엔터 프라이즈	점프노리 키즈카페	20130100384	키즈카페	0/11	0/5	0/3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원엔터 프라이즈	김밥킹	20150154	김밥전문점	0/27	0/26	0/3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소보루에프씨	소보루치킨	20110100275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중단	가맹사업중단	가맹사업중단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소보루에프씨	두 마리 아빠통닭	20140458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중단	가맹사업중단	가맹사업중단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매출액	면적(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
서울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합니다.

※※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은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나, 3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하는 연간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가 아닌 산출 가맹점 수의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추정 자료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귀하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다만,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34,938	
광고	비공개	비공개	34,938	
판촉	해당 없음			

※ 위 금액은 (주)아이원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내역이며, 이 금액은 (주)아이원 및 『파리공방』, 『포아이니』, 『아띠앙쥬』 브랜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으로 각 브랜드별 금액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파리공방』 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또는 담당부서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KB국민은행 송파개롱역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74-14	02-443-1781

2) 가맹금 예치절차

☞ 당사가 정한 예치 기관의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 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서비스」 계약체결대상
가맹본부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③ 대표자 신분증

※ 영업점 방문 후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가맹금 입금

대상
가맹점 사업자

- ① 가맹금예치신청서
- ② 신분증

※ 가맹본부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맹금 입금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대상
가맹본부

- ① 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
 -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확인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본
- 분쟁 종료에 따른 지급요청 시 분쟁조정 결과 서류 제출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또는 가맹계약 이후 2개월 경과 시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금 입금

대상
가맹점 사업자

- ① 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
 - ② 가맹본부의 동의서
- 분쟁 종료에 따른 지급요청 시 분쟁조정 결과 서류 제출

※ 가맹본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가맹금 반환

가맹금 지급보류

대상
가맹점 사업자

- ①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 ② 각 사유별 증빙서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신청

▶ 보류신청요건

-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알선, 중재,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 당사는 예치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은행기관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여건에 따라 당사는 은행에 예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증권을 제시하여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가 국민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조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파리공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14,300				(예외조건)
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 1. 당사가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권리 부여 (30%), 2. 영업지역 부여(20%), 3. 입지 선정 시 조건 (10%), 4.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 (10%), 5.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 (20%), 6.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10%)

※ 가맹비 반환 조건 : 개점 이전 해지, 개점 이후 해지

1.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당사는 가맹금 입금 후 설비공사 시작 전 양 당사자 상호 합의하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정산 후 30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외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귀하는 가맹점 운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와 협의 하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설정 및 증권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채무액 또는 계약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기간의 만료 및 해지로 인한 종료 시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제한 후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6,300	
가맹비	11,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3,3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면적49.5㎡당(구. 약15평)	면적3.3㎡당(구. 약 1평)			

합계		72,820	4,880			
인테리어	가맹본부	41,250	2,750	시공시작전일	당사의	
간판 등	가맹본부	7,700	520	시공시작전일	귀책사유	
주방 설비	가맹본부	18,700	130	물품주문일	가 없는	
주방 집기	가맹본부	7,700	520	물품주문일	한 시공	
가구	가맹본부	5,500	370	물품주문일	및 공급	
오픈물품	가맹본부	3,300	220	물품주문일	이후에는	
POS 시스템	가맹본부	5,500	370	물품주문일	반환될	
					수 없음	단, 매출관리 프로그램 사용 필수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인테리어 등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시공/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직접 시공/설치/구매 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 준수 여부의 관리감독을 위한 3.3㎡당 금일십오만원(₩150,000)<부가세별도>의 관리감독비와 금오백만원(₩5,000,000)<부가세별도>의 설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간판, 주방 기자재, 주방 비품 및 오픈준비물, 매출관리프로그램, 초도물품 등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밖의 시설 설비(렌트 가능),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 고(조언 요청 시)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결과 및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당사 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당사 조언 요청이 없는 경우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당사와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파리공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상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220,000원	익월 5일까지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조정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17p 5-8-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17p~18p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17p 5-8-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안됨	판촉비로 비용소요	17p~18p 참조
모바일상품권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식대, 교육비 등)	교육실시 전일까지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21p 참조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	발생 시 산정	시공 시작 전일 까지	반환 안됨	교체비로 비용소요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 후 결정
영업표지 변경 등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해당 없음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발생 시 산정	시공 시작 전일 까지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 및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장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없음

☞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상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5,500				
재가맹비	5,500	종료 전일	반환 안됨	재교육 및 관리비로 비용 소요	재교육 이수 필수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

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파리공방」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비용 및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부담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의 사용 중단 및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 비용은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은 당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일십만원(W1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지 참조1			
:	:	:	:	:

☞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 귀하가 [파리공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추천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급 중단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2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의 중단 4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2】**과 같습니다.

※ 귀하가 **【별첨 2】**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파리공방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기준 반경 500m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합의 진행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 당사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다만,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다만, 『파리공방』은 2018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파리공방」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 변경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재계약 체결 및 재가맹비를 부담하고,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와 물류공급 중단 사유

☞ 「가맹사업법」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해지 사유
1. 귀하가 본 가맹계약서 제24조(물품 공급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당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8.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9.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0.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한 물품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거나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이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7.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 및 관리 감독 규정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양도(사업자 명의변경 포함)한 경우
10.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1. 귀하가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 귀하가 당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또는 온라인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3. 귀하가 경업을 하거나 귀하의 직원 등을 통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귀하가 가맹계약서 4조("을"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15. 귀하가 기타 본 계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 즉시 해지 사유와 동일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반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반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반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각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조건(여부)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1. 승인 후 가능 2.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으며, 당사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리행사·위탁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교육비 부담 및 개정 전 교육 이수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정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정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동일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커피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은 권장하나, 영업일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 ~ 24:00	주 7일, 월 30일 이상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불가

※ 귀하는 당사가 정하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3일 전에 당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가맹점사업자 포함 2명	직접 근무	49.5㎡(약15평) 기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용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중 귀하 부담분	광고기획 →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75%	총 광고비의 25% 중 귀하 부담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 제작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 가맹본부가 100% 부담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할인 행사	판촉기획에 소요되는 총 비용	실제 판촉에 소요되는 총 비용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서비스 진행 안함

※ 귀하는 당사가 진행하는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는 본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시스템, 조리법 등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귀하는 당사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귀하는 당사의 계약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 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동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 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营业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9.5㎡(약15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9p~12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점포 현황서 제공 - 가맹계약서 교부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 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용

☞ 해당 없음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시정	가맹본부 부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 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내 →가맹점 방문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3일	3,300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이내	직원 교육 포함
특별 교육	추후 공지	식대, 교통비 등 교육 실비	추후 공지	교육 필요시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사항없음		
2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별첨 1] 당사가 정하는 원부재료 필수 공급 품목 및 거래형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당사가 정하는 판매 상품 및 권장 가격 내역

(단위:원)

No.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No.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비고
1	아메리카노	3,500	19	페페민트	3,800	가격 등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등으로 별도 공고
2	에스프레소	3,000	20	티라미수 크림치즈(케익3종)	3,200	
3	카푸치노	4,200	21	크로와상(오리지널)	2,500	
4	카페라떼	4,200	22	크로와상(크림2종)	3,500	
5	민트라떼	4,500	23	크로와상 아몬드 외 2종	4,000	
6	녹차라떼	4,500	24	로즈 히비스커스티	4,500	
7	티라미수라떼	4,500	25	스트로베리 블랜딩	4,500	
8	망고라떼	4,500	26	딸기자몽 블랜딩	4,500	
9	쿠키라떼	4,800	27	우유빙수(2인기준)	8,000	
10	더치커피	4,200	28	망고빙수(2인기준)	9,000	
11	레몬 라즈베리 에이드	4,500	29	티라미수빙수(2인기준)	10,500	
12	딸기에이드	4,500		이하여백		
13	복숭아 아이스트	3,500				
14	딸기복숭아 에이드	3,500				
15	딸기 스무디	4,500				
16	딸기 요거트 스무디	4,800				
17	망고 요거트/녹차 스무디	4,800				
18	캐모마일	3,800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3] 2023년(7기), 2022년(6기), 2021년(5기) 표준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